

대전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1087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소연

피고, 항소인 1. H

2. I

3. J

4. K

5. L

6. M

7. N

8. O

9. P

10. Q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6. 16.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5. 6. 선고 2018가단57549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충남 태안군 R 답 1,9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05㎡에 관하여, 1) 피고 N는 피고 H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3. 1. 8. 접수 제3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H는 피고들에게 별지목록 1 중 주장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0. 3. 10. 접수 제39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피고들은 S에게 별지목록 1 중 주장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3. 10. 22. 접수 제149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4쪽 13줄의 ‘증인’을 ‘제1심 법원의 증인’으로, 같은 쪽 같은 줄의 ‘증언에’를 ‘증언, 제1심 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각 고치고, 같은 쪽 14줄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제1심 증인 T이 R토지 중 별지 도면 선내 (ㄱ)부분(이하 ‘(ㄱ)토지’라 한다)의 증여관계, 갑 제2호증의1(매도증서) 및 을 제1호증의2(보증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원고 A이 피고 N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7나111916)에서와 달리 증언하는 등 그 증언에 일관성이 없어서 믿을 수 없다고 다룬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T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T은 위 소송에서부터 이 사건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973년경 R토지는 논둑을 경계로 (ㄱ)과 (ㄴ)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Z은 그중 (ㄱ)토지를 부친 S과 큰형 Y으로부터 전전 증여받아 이를 소유하던 중 AA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T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T의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 제1심 판결 5쪽 10줄의 ‘1973. 5. 3.’을 ‘1973. 5. 3.(음력 1973. 4. 1.)’로, 같은 쪽 13줄의 ‘1980. 1. 20.’을 ‘1980. 1. 20.(음력 1980. 12. 15.)’, 같은 쪽 20줄의 ‘S 또는 AB’을 ‘실질 소유자인 AB’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2줄의 ‘대상장 소유자로 기재된 S 또는’을 삭제하고, 같은 쪽의 ‘6), 7)항’을 다음과 같이 각 고친다.

「 6) W이 2010. 1. 13. 사망하자 피고 H는 R토지에 관하여 2010. 3. 1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39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 8. 피고

N에게 2013. 1. 3.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제1심 판결 9쪽 중 ‘④, ⑤항’을 ‘④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임을 전제로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위 보증서상 W에게 R토지 전체를 매도하였다는 AB이 위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보증서 기재대로 W이 1980. 10. 5.경 R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중 (ㄱ)토지에 대해서는 실질 소유자인 AA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어야 하는데 위 보증서에는 AA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으로, 같은 쪽 19줄의 ‘피고 H’를 ‘W의 처인 피고 H’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1줄의 ‘피고 앞으로’를 ‘피고 H, N 앞으로’, 같은 쪽 3줄의 ‘있다’를 ‘이유 있다’로 고친다.

2. 소송절차 하자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제1심 법원이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결정 없이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그 변론기일에서 한 증인신문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변론재개에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변론재개에 관한 명시적인 결정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재개로서 변론을 속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2. 25. 선고 70누125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명시적인 변론재개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제2회 변론기일 이후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제3회 변론기일을 고지하였던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변론재개에 관한 명시적인 결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이후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제4회 변론기일에서 증인 T, U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물론 피고들 소송대리인 역시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들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였던 점, 제1심 법원은 제5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을 고지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제1심은 사실상 변론을 재개하여 총 3회에 이르는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결정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변론재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결정서에 의한 변론재개결정이 누락된 것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변론재개 이후 세 차례나 열린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변론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론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박세진, 판사 강지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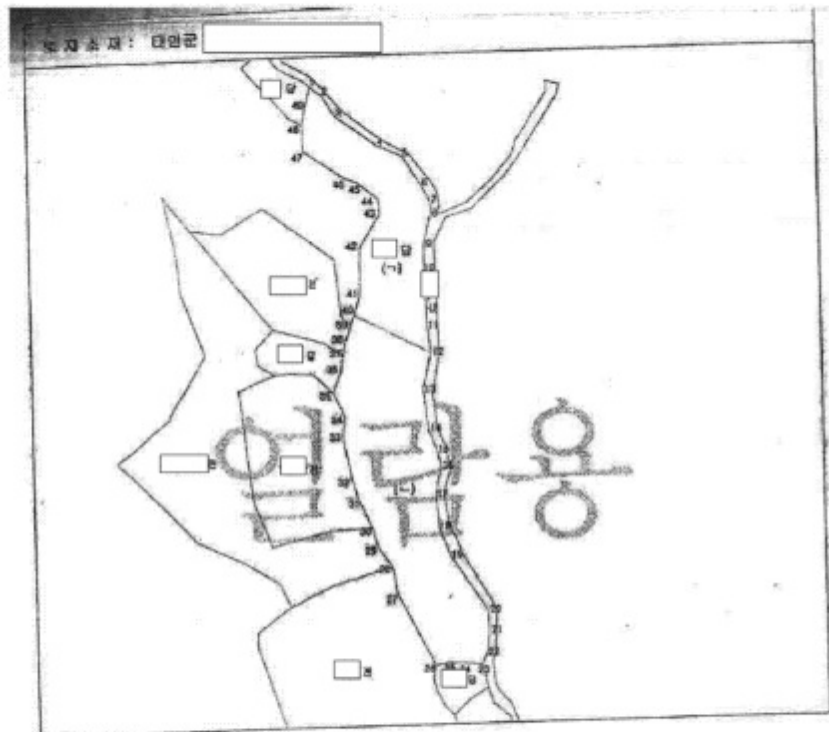
별지목록1

피상속인	상속인	주장상속지분	주장말소지분	인정상속지분	비고
W	H	3/21	105.75/705	3/23	
	I	각 2/21	각 67.2428/705	각 2/23	
	J				
	K				
	L				
	M				
	N				
	O				
	P				
	Q				
	X			2/23	이 사건 피고는 아니다

별지목록2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지분
V	A	3/15
	B	각 2/15
	C	
	D	
	E	
	F	
	G	

별지도면



(감정내용)

지번		부호	면적(㎡)	비고
[~]	[~]	1,2,3,4,5,6,7,8,9,10,11,12,40,41,42,43,44,45,46,47,48,49, 1필 수지적으로 연결	705	문화권(문화체육관광부)으로 사용
	[~]	40,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 36,37,38,39,40 필 수지적으로 연결	1285	문화권으로 사용